

의안번호	2204541
의 퇴 인	이병진의원
회 답 일	2024. 10. 24.
추계번호	24B4252

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5조의2 신설(불법어업활동피해어업인지원기금의 설치 및 운영)	정부는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으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<u>불법어업활동피해어업인지원기금</u>(이하 “기금”이라 함)을 설치함(제1항) 기금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운용·관리함(제2항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함(제3항) 1. 이 법에 따라 납부된 벌금액의 100분의 30이내 2. 제24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는 담보금 3. 정부 및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4. 기금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함(제4항) 1.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으로 생명, 신체 등 인적 피해를 입은 어업인에 대한 지원 2.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으로 어구, 선박 등 물적 피해를 입은 어업인에 대한 지원 3.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에 쓰인 어구 등 해양쓰레기 수거에 대한 지원 4. 기금의 조성·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경비 5. 그 밖에 기금설치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해에 대한 지원	의무규정

II. 미첨부 등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5조의2 신설(불법어업활동피해어업인지원기금의 설치 및 운영)	•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불법어업활동피해어업인지원기금의 설치 및 운영(안 제15조의2 신설)

□ 개정안은 정부가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으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불법어업활동피해어업인지원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함)을 설치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기금을 운용·관리하며 정부 출연금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함

○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함

1. 이 법에 따라 납부된 벌금액의 100분의 30이내

2. 제24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는 담보금¹⁾

※ 이 법에 따라 징수된 벌금액 및 국고 귀속 담보금을 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추가재정소요와 무관함

※ [참고자료] 외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및 담보금 현황 참고

1) 법 제23조(위반 선박 등에 대한 사법절차) ①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이 법,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한 선박 또는 그 선박의 선장이나 그 밖의 위반자에 대하여 정선, 승선, 검색, 나포(拿捕)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검사에게 보고하되, 사정이 급하여 미리 지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제1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③ 검사는 제1항의 조치를 하였거나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선장이나 그 밖의 위반자에게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이 하는 어업활동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담보금이나 담보금 제공을 보증하는 서류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에게 제출되었을 때에는 선장이나 그 밖의 위반자를 석방하고, 선박을 반환한다는 취지

2. 담보금의 금액

④ (생략)

⑤ 제3항제2호에 따른 담보금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검사가 위반 사항의 내용과 위반횟수,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한다.

법 시행령 제9조(담보금의 금액에 관한 기준)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담보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유형, 위반행위에 대하여 규정된 벌금액, 위반 정도 및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.

법 제24조(담보금의 보관·국고귀속 및 반환 등) ① 담보금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가 보관한다.

② 담보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일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1개월이 지난 날에 국고에 귀속된다. 다만, 국고 귀속일 전날까지 선장이나 그 밖의 위반자가 지정일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3개월이 지나기 전의 특정일에 출석하거나 압수물을 제출한다는 취지의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선장이나 그 밖의 위반자가 검사 또는 법원으로부터 출석을 요구받고도 그 지정일 및 지정 장소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

2. 선장이나 그 밖의 위반자가 검사 또는 법원으로부터 반환된 압수물의 제출을 요구받고도 그 지정일 및 지정 장소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

③ 제2항 단서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지 아니한 담보금은 선장이나 그 밖의 위반자가 그가 신청한 특정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압수물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국고에 귀속된다.

④ (생략)

3. 정부 및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

4. 기금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

□ 그러나 현시점에서는 불법어업활동피해어업인지원기금의 규모, 정부 출연금 등을 예측하기 곤란하고, 기금의 관리·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²⁾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합리적인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음

2) 안 제15조의2(불법어업활동피해어업인지원기금의 설치 및 운영)

⑥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·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이주호	배아형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주호	02-6788-3746	progress@nabo.go.kr

[참고자료] 외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및 담보금 현황

(해양수산부 제출자료)

□ 최근 5년간 외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등 현황

(단위: 척)

연도	총계	유형별 적발현황				비고
		영해침범	특정금지 구역침범	무허가	제한조건 위반 등	
2020	35	4	2	4	25	
2021	108	4	5	23	76	
2022	88	4	3	8	73	
2023	113	9	3	12	89	
2024.9.	59	1	—	8	50	

□ 최근 5년간 현행법에 따라 징수한 담보금 및 벌금 현황

○ 불법어선 담보금 징수 현황

(단위: 백만원, 척)

연도	2020	2021	2022	2023	2024.9.
담보금	2,460	7,898	3,532	7,970	5,060
어선 수	30	90	77	102	55

○ 불법어선 벌금 징수 현황

- 위반어선 나포 시 담당 검사는 「경제수역어업주권법」 제23조에 따라 담보금을 결정하며, 위반자가 담보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즉시 석방함
- 검사는 그 담보금을 보관하고 있다가 법원에 약식기소 후 법원판결(벌금형)에 따라 벌금으로 대체되고 있음
- 이에 따라 벌금 징수 현황에 대해 해양수산부에서 파악하기 어려우나 담보금 징수 현황과 유사할 것으로 추정됨